

KOLAS-G-001: 2015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OTIE, Korea

1. 적용범위

1.1 이 지침은 KOLAS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공인기관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할 경우의 KOLAS 인정마크 사용(ILAC MRA 마크) 및 공인기관임을 표시 하는 방법 등의 세부적용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ILAC-MRA마크 사용협정 체결에 따라 KOLAS 공인시험·교정기관을 대상으로 ILAC-MRA 조합마크의 사용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 정의

2.1 공인기관

KOLAS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메디컬시험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을 말한다.

2.2 국제공인기관

KOLAS 공인기관 중 ILAC MRA 협정 범위에 포함되는 공인시험기관 및 공인교정기관을 말한다.

2.3. KOLAS 로고

한국인정기구(KOLAS)의 로고를 말한다.

2.4 KOLAS 인정마크

공인기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볼을 말한다. 이 마크에는 KOLAS 로고에 공인기관의 인정번호 및 인정분야가 함께 표시된다.

2.5 ILAC-MRA 마크

ILAC MRA 서명국이 공인성적서를 상호 수용하기 위하여 국제시험기관인정 협력체(ILAC)에서 정한 마크를 말한다.

2.6 국제공인 인정마크

ILAC-MRA 마크 사용협정에 따라 국제공인기관이 그들의 인정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볼을 말한다. 이 마크는 ILAC-MRA 마크와 KOLAS

인정마크를 조합하여 표시하며, 공인시험기관 및 공인교정기관 중 KOLAS 로부터 국제공인인정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이 사용할 수 있다.

2.7 공인성적서

공인기관이 KOLAS 인정마크 또는 국제공인 인정마크를 표시하여 발행하는 교정성적서, 시험성적서, 검사성적서, 메디컬시험성적서(결과보고서) 또는 표준물질인증서를 말한다.

3. KOLAS 로고 및 KOLAS 인정마크

3.1 KOLAS 로고 및 KOLAS 인정마크의 작도법은 별표 1과 같다.

비고) KOLAS 인정마크는 별표1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인기관의 인정번호가들어가며, 다음과 같이 인정분야 및 인정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시험기관: TESTING NO.KT000

교정기관: CALIBRATION NO.KC00-000

검사기관: INSPECTION NO.KI000

표준물질생산기관: REFERENCE MATERIAL PRODUCER NO.KRMPs-000

메디컬시험기관: MEDICAL TESTING NO.KM000-0

숙련도시험운영기관: PROFICIENCY TESTING PROVIDER NO.KPTP000

3.2 KOLAS 공인기관 표시판의 작도법은 별표 2와 같다.

4. ILAC MRA 마크 및 국제공인 인정마크

- **4.1** ILAC-MRA 마크와 KOLAS 인정마크가 조합된 국제공인 인정마크는 별표3과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ILAC-MRA 마크의 색상은 청색 또는 흑색으로 한다.
- 4.2 국제공인기관 표시판은 별표 4와 같이 조합하여 표시한다.

5. 공인성적서 작성방법

5.1 인정마크의 사용 및 공인기관의 표시

- **5.1.1** 공인기관은 공인성적서 표시를 위해 성적서 상단 좌, 우측 가장자리나 중앙 중 한 곳에 KOLAS 로고를 배치시켜야 한다.
- 5.1.2 성적서 서식 정 가운데에 KOLAS 인정마크 또는 국제공인 인정마크를 음영 처리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명암 10 % 이하의 워터마크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음영기법의 채택은 공인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5.1.3 공인기관이 다른 법령에 의해 지정을 받아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성적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에도 KOLAS 인정마크 또는 국제공인 인정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마크를 성적서 상단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1.2항에 규정된 워터마크나, 인정의 언급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5.2 승인 받은 기술책임자의 서명 공인성적서는 KOLAS 사무국에 등록된 기술책임자가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 5.3 인정받지 않은 결과에 대한 공인성적서 작성 공인기관은 인정받지 않은 범위의 결과를 포함하는 공인성적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방침에 따라야 한다.
- ① 인정받지 않은 범위의 결과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성적서와 증명서 및 이들을 동봉하는 서류(인정마크가 인쇄되어 있는 편지지를 포함)에도 인정에 관한 언급을 할 수 없다.
- ② 공인성적서에 인정받지 않은 범위의 결과가 일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범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범위의 결과가 KOLAS 인정과 관련이 없음을 고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인성적서에 해당 결과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 " * 표시된 시험/교정의 결과는 당 공인기관의 인정범위 밖의 것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공인성적서의 결과는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경영시스템과 소급성 수준을 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정받지 않은 결과에 대해 성적서 또는 증명서, 첨부 문서, 기타 자료 등에도 인정사실과 다르게 그 작 업이 인정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결과의 사용자 또는 관련 당사자들에 게 이를 믿게 유도하는 어떤 사항도 있어서는 안 된다.

5.4 위탁 계약된 업무

- **5.4.1** 공인기관이 타 기관(이하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보고받은 결과를 공인 성적서에 포함하여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성적서의 발급방법은 다음 방침을 따라야 한다.
- ① 공인기관은 위탁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고객에게 위탁 사실을 알리거나, 해당되는 경우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위탁기관은 해당 작업이 관련 표준을 준수하고, 이에 부합한다는 증거를 기록·유지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 ③ 위탁기관은 공인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정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하며, 위탁된 결과는 공인기관의 공인성적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5.4.2 공인기관이 인정받지 않은 기관의 위탁결과를 공인성적서에 포함할 경우 5.3항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탁의 결과가 인정범위 밖의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5.5 규격과의 적합성 표시

고객이 성적서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진술이나 또는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성적서나 증명서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KOLAS-G-003(시험/교정 결과와 규격과의 적합성 보고 방법)과 ILAC G8(Guidelines on Assessment and Reporting of Compliance with Specification, 2009)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발행할 수 있다.

5.6 의견 및 해석 표시

5.6.1 공인기관의 고객이 KOLAS 인정마크 및 국제공인 인정마크가 표시된 공인성적서에 사용된 물품, 샘플, 배치 또는 의뢰된 품목의 특정 결과에 관한 부가적인 의견 또는 기술적 해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조항에 따라 공

인기관의 성적서상에 문구가 포함된다.

- ① 성적서나 증명서에 진술하는 결과 해석은 오직 인정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 ② 의견 및 해석에 대한 승인된 진술을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명자를 따로 두어야 한다.
- 5.6.2 의견 및 해석에 대한 진술이 인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성적서 내의 인정마크 또는 의견 진술 근처에 다음과 같은 부인성명서 (disclaimer)를 표기하여야 한다.
 - "이 성적서 내의 의견/해석은 당 공인기관 인정범위 밖의 것임을 밝힙니다."
- 5.7 교정성적서 및 라벨

5.7.1 교정성적서

교정성적서의 교정 결과는 해당 신뢰수준과 포함인자 k(coverage factor)값이 기술된 적절한 불확도값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 5.7.2 작성양식
- 5.7.2.1 성적서의 작성양식은 별표5에 따른다.
- 5.7.2.2 별표5에 규정된 교정필증의 서식 적용이 불가하거나 서식에 모든 항목을 기술하기가 불가능한 소형 측정기(마이크로미터, 다이얼 게이지 등)에는 교정번호, 교정일자 및 교정기관장(인)만의 정보가 수록된 서식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5.7.3 양식의 규격(크기)

교정성적서는 A4 용지 사이즈, 교정 필증은 45 mm × 64 mm를 기준규격으로 하되, 방향 및 크기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5.7.4 교정성적서 및 교정 필증의 색상

교정성적서와 교정 필증의 바탕 색상은 흰색으로하여 기록된 정보가 잘보이도록 한다.

- 5.7.5 측정기의 명세 및 교정일자
- 5.7.5.1 측정기의 기기명을 기재할 때에는 한글 또는 원어로 기입할 수 있으나,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어 그대로 기입한다.
- 5.7.5.2 교정일자는 실제 교정이 실시된 일자를 기록하여야 하며, 교정성적서 또는 교정 필증에는 고객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교정주기에 대한 권고사항을 수록해서는 안된다.

5.7.6 교정환경

5.7.6.1 교정환경의 기록은 법정 기준온도 및 습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다른 환경조건에서 측정기를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실제로 교정을 실시한 당시의 온도 및 습도를 기록한다.

예) (측정대표값 ± 분포범위) (22.5 ± 0.7) [°]C, (50 ± 2) % R.H.

비고) 상기 교정환경의 데이터는 실제 교정시간동안의 온도, 습도의 변화량의 분포가 표시되어야 한다.

5.7.6.2 교정장소는 실제 교정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입하여야 한다.

5.7.7 측정표준의 소급성

측정표준의 소급성을 기록할 때에는 국가측정표준과의 연결고리를 서술하여야 하므로 교정방법 및 절차, 교정에 사용한 표준기의 명세를 다음 예시와 같이 간략히 표현한다.

예시) 상기 기기는 게이지블럭 표준교정절차서(KASTO 97-01-003-002)에 따라 국가측정표준기관으로부터 측정의 소급성이 확보된 아래 AA급 표준 게이지블럭과 게이지블럭 비교기를 이용하여 비교교정 되었다.

"교정에 사용된 표준장비 명세" 작성 예시

<u>기기명</u>	제작회사 및 형식	기기번호	차기교정예정일자	교정기관
게이지블럭(AA)	미쓰도요 458, sn	2345	2001.10.27	KRISS
게이지블럭 비교기	미쓰도요 458, sn	1235	2000.12.13	KRISS

비고) 간혹 표준장비의 교정일자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난은 교정이 유효한 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차기교정예정일자를 기재한다. 또한 본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한다.

5.7.8 교정결과

- **5.7.8.1** 교정결과를 기록하는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페이지는 계속 연결되어야 한다.
- 5.7.8.2 사양 초과 여부를 밝힐 경우에는 측정불확도를 고려하여야 하고 사양초과사항을 세부적으로 진술(notify)해야 한다.
- 5.7.8.3 사용자 입장에서 교정결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피교정기기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예) 표준값 100.0일 때 지시값 101이 아니고 지시값 100, 표준값 99.0 (지시값 : 피교정기기의 지시값, 명칭값, 설정값 등을 포함함)
- **5.7.8.4** 고객의 별도 요구에 따라 피교정기기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전의 측정값과 조정후의 교정값이 병기되어야 한다.
- 5.7.8.5 교정결과를 별지에 추가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페이지의 교정결과 의 끝에 "끝"을 기입한다.

5.7.9 측정불확도

성적서 내에 측정불확도를 기재할 때에는 신뢰수준과 포함인자 k(coverage factor)값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만일 성적서 서식의 여백이 부족할 시에는 별지를 활용토록 한다.

5.7.10 교정성적서 및 교정필증의 발급(확인)

교정성적서의 작성자, 승인자(기술책임자)의 확인란은 반드시 승인 받은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대표자의 확인란은 자필서명 또는 품질문서에 등록된 직인으로 할 수 있다. 대표자 직인은 품질문서에 등록 관리되어야 한다.

6. 상호인정의 주장

KOLAS로부터 공인받은 시험 또는 교정기관은 공인성적서상에 KOLAS와 체결한 국가간 또는 시험기관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상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할 수 있다.(검사기관, 메디컬시험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숙련도 시험운영기관 제외)

위 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서명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받은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결과입니다.

다만, 승인된 공인성적서 또는 증명서 상에 상호인정협정 파트너의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로고 사용에 대한 체결기구 파트너간 개별 상호협정이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7. 국제공인 인정마크의 사용기준

7.1 자격조건

7.1.1 KOLAS 공인시험기관 및 공인교정기관 중 국제공인 인정마크의 사용을 원하는 기관은 KOLAS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7.1.2 ILAC MRA 미체결 분야인 검사기관, 메디컬시험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은 KOLAS 인정마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7.2 승인절차

7.2.1 국제공인 인정마크의 사용을 원하는 공인기관은 별표6의 국제공인 인정마크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KOLAS 사무국에 국제공인 인정마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7.2.2 신청기관은 KOLAS의 장으로부터 국제공인 인정마크 사용에 관한 서면 승인 후 국제공인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7.3 사용 범위

- 7.3.1 KOLAS 공인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은 자신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공인성적서 발급 시 제5항(공인성적서 작성방법)에 따라 국제공인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 7.3.2 국제공인 인정마크는 공인성적서 및 공인기관의 지위를 표시하기 위해 현판, 편지지, 펙스용지, 편지봉투, 브로셔, 인터넷 베너, 포스터, 뉴스레터, 연간보고서, 발표자료 및 명함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 7.4 사용의 제한 및 사후관리
- 7.4.1 KOLAS의 장은 공인기관의 운영실태, 사후관리 등 현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국제공인 인정마크의 오·남용 또는 인정시스템의 저하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기관의 국제공인 인정마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7.4.2 KOLAS 사무국은 국제공인 인정마크의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 7.5 공인기관의 의무
- 7.5.1 공인기관은 「ILAC-MRA마크 사용협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ILAC-MRA 마크 사용협정」의 위반, 침해로 인하여 KOLAS에게 어떠한 피해를 가하게 될 경우 KOLAS는 해당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7.5.2 공인기관은 KOLAS 인정마크 및 국제공인 인정마크를 사용한 공인성적서 발급실적을 정기적으로 KOLAS 사무국에 보고(년 1회 이상)하여야 한다.
- 8. 광고 및 선전

공인기관과 해당 모기관은 자신들의 광고 및 선전 자료나 문서에 KOLAS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마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인기관으로서의 인정사실을 알리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나 문서들이 있을 수 있다.

- 선전 및 광고 자료
- 브로셔 및 기관 발행물
- 기술 문서
- 사업 보고서
- 견적서 또는 제안서

이 경우 KOLAS 인정마크의 사용과 공인기관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공인기관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인정된 범위 내의 인정업무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으며 기관이 수행하는 다른 업무와 관련지을 수는 없다. 또한 제안서 또는 견적서에 공인받은 항목과 공인받지 않은 항목은 반드시구별하여야 한다.
- KOLAS 인정마크를 표기하거나 공인기관임을 표시할 경우에는 샘플이나 제품(또는 제품의 일부)에는 언급할 수 없으며, 품목이나 제품이 인증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KOLAS 인정마크의 표기 또는 공인기관 표시가 KOLAS 사무국에서 성적서의 결과 또는 이 결과로부터 도출된 의견 및 해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거나, KOLAS가 성적서 발행을 승인한 듯한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KOLAS 인정마크가 편지상단 그리고/또는 기타 편지지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 인정범위 이외의 범위에 대한 업무의 제안 또는 인용을 위해 사용,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또는 메디컬 결과의 보고, 제품 혹은 물품 인증서 발급 등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9. KOLAS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표시 오용 시의 제재사항

공인기관이 KOLAS 로고, KOLAS 인정마크 및 국제공인 인정마크 또는 공인기관 표시를 오용할 경우에는 인정취소, 인정정지, 개선명령,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인정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나 인정취소 또는 정지된 자가 KOLAS 로고 또는 KOLAS 인정마크 및 국제공인 인정마크를 사용한 때에는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10.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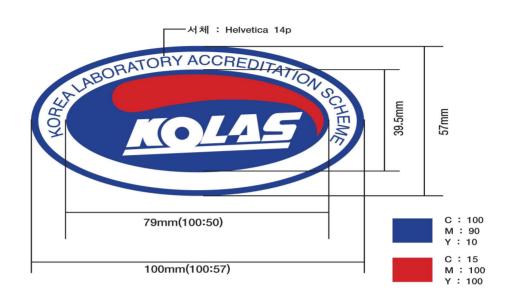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부칙 제3조에서 폐지되는 고시에 의하여 행한 지정 또는 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정마크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지침(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083호, 2013. 3. 5)은 폐지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KOLAS 로고 및 인정마크

1. KOLAS 로고 작도법



2. KOLAS 인정마크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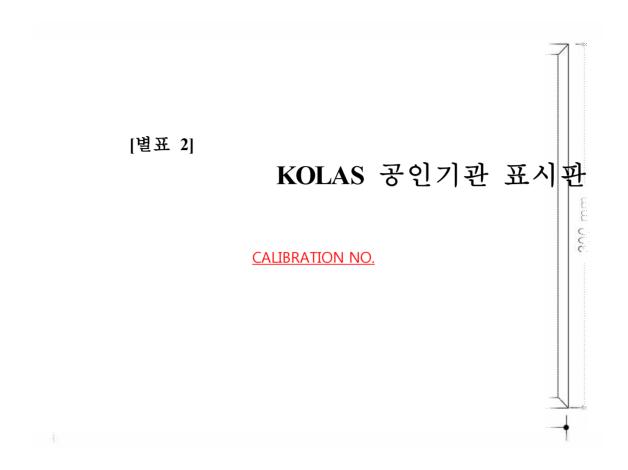
표준물질생산기관



메디컬시험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 1. 문자의 형태는 고딕체로 한다.
- 2. 공인기관 현판의 색상은 동판 (또는 스텐레스 원판 색상)으로 한다.
- 3. 모든 문자는 남색으로 하며, 중앙에 위치한 KOLAS 로고(태극마크)의 아랫부분은 청색, 윗부분은 적색으로 한다.
- 4. 인정분야별로 공인기관 표시판의 KOLAS 로고 하단부에 삽입되는 문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정기구 (KOLAS)

페이지 (13)/(22)

[별표 3]

국제공인 인정마크 사용법

1. 공인시험기관



[별표 4]

국제공인기관 표시판

- 1. 문자의 형태는 고딕체로 한다.
- 2. 공인기관 현판의 색상은 동판 (또는 스텐레스 원판 색상)으로 한다.
- 3. 모든 문자는 남색으로 하며, 국제공인 인정마크는 별표3에 따라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 4. 인정분야별로 공인기관 표시판의 KOLAS 로고 하단부에 삽입되는 문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정기구 (KOLAS) 페이지 (15)/(22) 5. 다만, 1개 기관에서 교정기관과 시험기관을 함께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제4항에 기술된 해당문자를 아래쪽으로 연이어 기술하되, 이때 표시판 세로의 길이는 30

em = 제하되지느 아니하다

[별표 5]

성적서 작성 예시

5-1) 시험성적서(국문 참고자료)

시험성적서

시험기관명

시험기관 주소

Tel: 00-000-0000 Fax: 00-000-0000

성적서번호: 페이지()/(총)



- 1. 의뢰자
- 기 관 명:
- 주 소:
- 2. 시험대상품목/물질/시료 설명
- 3. 시험기간:
- 4. 시험방법:
- 5. 시험결과
- 시험항목, 단위, 결과, 측정불확도(신뢰수준 약 %,k=)[필요 시 포함사항] 등
 - 이 시험결과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에만 한정됩니다.
 - * 표시된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인정범위 밖의 것임을 밝힙니다.

확	인 작성자 성 명	(서 명)	기술책임자 성 명:	(서명)
---	-----------------	-------	---------------	------

위 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서명한 한국 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받은 분야에 대한 시험결과입니다.

201 . . .

한국인정기구 인정 〇〇시험기관장 (인)

5-2) 시험성적서(영문 참고자료)

TEST REPORT

Name of Laboratory

Address of Laboratory

Tel: 00-000-0000 Fax: 00-000-0000

Report No.:

Page()/()Pages



1. Client

- O Name:
- Address :
- 2. Sample Description
- 3. Date of Test
- 4. Test method used
- 5. Test Results

Test Item, Unit, Result, Measurement uncertainty(Confidence level about % k=) [if needed] etc.

Affirmation		Technical Manager
Ammation	Name : (Signature)	Name : (Signature)

The above testing certificate is the accredited test result by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which signed the ILAC-MRA.

201 . . .

O Testing Laboratory Accredited by KOLAS, Republic of KOREA

5-3) 교정성적서(국문)

교정성적서

교정기관명	성적시] 번호 :	JABORATO	DRY ACCREDITATION		
교정기관 주소	· ·] ()/(총)	To BEA	KOLAS		
Tel: 00-000-0000 Fax: 00-000-0000				LIBRATION NO.		
1. 의 뢰 자						
기 관 명 :						
주 소:						
2. 측 정 기						
기 기 명 :						
제작회사 및 형식 :						
기기번호 :						
3. 교정일자 :						
4. 교정환경						
온 도:(±)				R.H.		
교정장소 : 🗌 고정표준실] 이동교정] 현장교정		
5. 측정표준의 소급성						
교정방법 및 소급성 서술						
교정에 사용한 표준장비 명세						
기기명 제작회사 및 형식 기	 기번호	차기교정예기	정일자	교정기관		
770 7777 20 7		7 7 0 4		0 1 2		
6. 교정결과 :						
a 중기원회는						
7. 측정불확도 : 						
회 이 작성자		·인자 · 이 /키스ㅋ)) () =])			
확인 성명 (서명) ² / ₂	위 : (기술 ³ 명 :	백입사)	(서 명)		
위 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서명한 한국인정기						
구(KOLAS)로부터 공인받은 분야의 교정결과입니다.						
201						
•						
한국인정기구 인정 〇 교정기관장 (인)						
안국 (주) 이 성적서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에 '						
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 ===(1 1	,, , , , , , , , , , , , , , , , , , , ,	<u> </u>		

5-4) 교정성적서(영문)

CALIBRATION CERTIFICATE

96 Gyog Gy	n Laboratory yukwon, Gwacheon- eonggi-do, Korea 19-7229, Fax: 02-507-	-si,		ate No:) of () LOBEAL OBEAL	RATORY ACCHEDITATION OF THE PROPERTY OF THE PR
1. Client Name: Address: 2. Calibration Subject Description: Manufacturer and Model Name: Serial Number: 3. Date of Calibration: 4. Environment Temperature: (±) °C Humidity: (±) % R.H. Location: □ Permanent Calibration Lab □ Mobile Lab □ On Site Calibration 5. Traceability Calibration method and/or brief description List of used standards/specifications						
Description Manufacturer and Model Serial Number		umber		date of	Calibration laboratory	
6. Calibration result : 7. Measurement uncertainty :						
attirmation	Measurements perfo	ormed by (signati	ure)	Approved Title : Name:	d by	(signature)
The above calibration certificate is the accredited calibration items by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which signed the ILAC-MRA. 201 Calibration Laboratory Accredited by KOLAS, Republic of KOREA						
(NOTE) If any significant instability or other adverse factor(overload, temperature, humidity etc.) manifests itself before, during or after calibration, and is likely to affect the validity of the calibration.						

5-5) 교정필증

교	정	필	증
C	alibration	Label	
① 성적서 번호 Calibration Certificate No.			
② 기 기 명 Description			
③기기번호 Serial No.			
④교 정 일 자 Date of Calibration			
⑤ 차기교정예정일자 The due date of next Calibration	"자체교기	정주기에	따름"

한국인정기구 인정 ○ ○교정기관장(인)

Calibration Laboratory Accredited by KOLA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Republic of Korea

비고1) 위 서식은 45 mm × 64 mm를 기준규격으로 하되 서식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같은 배율로 축소,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비고2) 교정필증의 서식 중앙부에는 KOLAS 인정마크를 음영으로 처리하되, 이때 기술정보를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명암 10 %의 워터마크로 처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비고3) 교정성적서 또는 교정필증에는 고객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교정주기에 대한 권고사항을 수록해서는 아니 된다 (ISO/IEC 17025 제5.10.4.4항 참조)

[별표 제6호 서식]

국제공인 인정마크 사용신청서						
① 기 관 명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법인등	등록번호			
⑤ 법인주소			전화번.	ই_		
			FAX번	호		
⑥ 사업장			전화번.	ই		
소재지			FAX번	호		
⑦ 인정번호						
⑧ 인정분야	□ 공인시험기관 [□ 공인교	정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인정마크사용및국제공인기관표시를위한지침에 따라 국제공인 인정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정기구장 귀 하						
구비서류 : 시험기관조합 ILAC-MRA 마크 샘플						

[부속서:양식]

시험기관조합 ILAC-MRA 마크 샘플(예시)

1. 공인시험기관의 경우

